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가합46029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담당변호사 A''''

피 고 부산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임혜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D''

변 론 종 결 2013. 5. 9.

판 결 선 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514,243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위 각 돈에 대한 2008. 11. 18.부터 2013.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0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6,103,25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 A는 G중학교 3학년 재학 중 위 E고등학교 야구부 예비 입학생으로 선발되어 합숙훈련을 받은 자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E고등학교장 E'은 2008. 10. 30. G중학교, H중학교, I중학교에 각 학교의 졸업 예정인 야구 체육특기자 중 E고등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체력테스트 및 팀적응 훈련(2008. 11. 3. ~ 2009. 2. 28.)을 위하여 훈련참가협조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A등 13명은 위 합숙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위 훈련 당시 J는 E고등학교 야구 감독으로서, K, L는 야구부 코치로서 위 학교 야구부원 및 예비신입생들을 지도·교육 하였다.

다) 원고 A는 합숙훈련 중이던 2008. 11. 18.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야구부원인 M과 한 조를 이루어 실시한 타격연습에서 위 M에게 야구공을 던지던 중, 위 M이 야구 방망이로 친 야구공을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야구공을 자신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외림프 누공으로 인한 왼쪽 귀 전농, 왼쪽 전정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행하여진 타격연습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투수 역할의 보조선수와 그 공을 타격하는 선수가 한 조가 되어 약 12~13m 떨어진 곳에서(실전에서 투수와 타자의 거리는 18.44m임) 보조선수가 공을 던지면 타격하는 선수가 이 공을 방망이로 타격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훈련이다.

(2) 보조선수는 '■'자 모양의 안전그물망(낮은 부분의 높이가 약 120~130cm, 폭은 약 2m 가량임) 뒤에서 공을 던진 후 안전그물망 뒤로 피하여 날아오는 공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사고 당시 타격훈련을 할 때 타격하는 선수는 의무적으로 헬멧을 써야 했으나, 학교측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수에게 헬멧을 쓰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헬멧을 쓰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하지는 않았으며, 통상 보조선수들은 땀이 나고 답답하다

는 이유로 대부분 헬멧을 쓰지 않고 타격연습에 임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후에는 학교측에서 투수역할을 하는 보조 선수에게도 헬멧을 쓰도록 의무화하였다.

바) 원고 A는 2008. 11. 18.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N병원(이하 'N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두통, 구토, 이명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다음 날에는 왼쪽 귀 난청과 보행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 A는 2008. 11. 18.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N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2. 1., 같은 달 2.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다시 훈련에 합류하였다가 이상을 느껴 2008. 12. 4. 부산대학교병원에서, 2008. 12. 9.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외상으로 외림프 누공이 발생하여 표준순음청력검사상 좌측 전농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8. 12. 16., 2009. 8. 10., 2009. 8. 11. 서울아산병원에서, 2010. 3. 25., 2011. 4. 8.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2012. 3. 12. 고신대학교복음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08. 12.경 청력회복가능성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고, 계속하여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사)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원고 A가 내원하였던 N병원은 원고 A의 증상에 대하여 좌측 외림프 누공이 아닌 좌측 혈고실로 오진을 하였고, 그 후 N병원은 진단상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합의금 3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내지 12호증, 을 제1, 2, 4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M, L의 각 증언,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 부산대학교병원장, N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졸업예정인 중학생들의 훈련을 위탁 받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또는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는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하여 아직 그 운동능력이나 분별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타격훈련시 보조선수와 타자 사이에 간격이 12~13m 정도로 매우 가까웠던 점, 야구경기나 연습과정에서 투수가 타구에 맞는 사고는 성인들의 프로야구에서조차도 종종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면, 비록 안전그물망을 설치하고 그 뒤에서 보조선수가 공을 던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타격연습 중 타자가 전방을 향하여 타격한 공이 보조선수의 몸에 직접 맞게 되는 사고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학교 교장인 E'이나 위 학교의

야구감독인 J에게는, 아직 E고등학교에 입학조차 하지 아니하여 훈련 내용이 익숙하지 아니하였을 원고 A에게 실제 경기가 아닌 타격훈련 중에도 만일의 타구에 대비하여 귀를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부착된 헬멧 등의 보호용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감독함과 아울러, 타자에게 공을 던진 후 즉시 안전그물망 뒤로 몸을 피하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E'과 피고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한 J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 A와 그의 부모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의 청력 감소는 사고 직후 N병원에서 의사의 판단상의 착오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이 그 원인이고,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청룡기 전국야구대회에서 타격상,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수훈상을 수상하고, 고교 졸업 후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는 등 정상적인 선수활동을 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A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N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N병원으로부터 원고 A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고등학교 야구선수로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2010년 청룡기 전국야구대회에서 타격상, 2010년 화랑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수훈상을 수상하고, 2012. 2.경 O프로야구단에 연습생으로 입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 5,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병원장, N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

고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N병원에서 시행한 측두골 단층 촬영결과 대량의 내이 기종이 관찰되어 그 당시 이미 외림프 누공으로 인해 청력이 전농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 후 부산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결과 2008. 12. 초경 좌측 전농의 진단을 받은 점, 외림프 누공의 일반적인 치료는 현기증 억제제 등 약물을 사용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보전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2주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청력 손실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며,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청력의 회복은 16~62% 정도이고 수술전 청력이 이미 전농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 점, 따라서 N병원에서 원고 A의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초기에 보전적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의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 A의 청력 감소에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계속하여 어지러운 증세를 호소한 점, 단지 야구대회에 출전하여 선수생활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청력 감소, 어지럼증 등의 증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상해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증인 M의 일부 증언,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M에게 타격연습을 위하여 공을 던진 후 안전그물망 밑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안전그물망에서 벗어난 부분에 머리를 노출한 채 그대로 서 있다가 M이 타격한 공에 왼쪽 귀를 맞은 사실(원고들은 원고 A가 수비연습 중 굴러온 공을 밟고 넘어져 안전그

물망 밖으로 벗어나 공에 맞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M의 일부 증언,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록 의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을 던지는 보조선수도 헬멧을 쓰라는 감독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원고 A가 타격연습에 임하기 전에 헬멧을 스스로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격연습에서 공을 던지는 보조선수로서는 언제든지 타구가 본인에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이므로 스스로 헬멧 등의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공을 던진 후에도 타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즉시 안전 그물망 뒤로 몸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에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지만 위 상해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6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1)항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16,285,60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 1993. 7. 27.생 남자

○ 사고발생일 : 2008. 11. 18.

○ 사고 당시의 나이 : 15세 3개월 22일

○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62.02년, 2070. 11. 10.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

○ 가동기간 : 원고 A가 프로야구단에 연습생으로 입단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2. 1.부터 성년에 달한 때(2013. 7. 26.)까지, 그리고 21개월(육군의 의무복무기간)간 병역 복무를 마칠 무렵인 2015. 4. 27.부터 60세가 되는 2053. 7. 26.까지이다.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에 거주 중인 학생으로서 군복무기간 21개월을 제외한 2012. 2. 1.부터 그가 40세가 될 때(2033. 7. 26.)까지 약 237개월 동안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경력에 비추어 장차 얻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는 월 2,400,000원(= 프로야구 연습생의 월 임금 상당액), 40세가 된 날(2033. 7. 27.)부터 60세가 될 때(2053. 7. 26.)까지 240개월 동안 도시일용노동자로서 월 1,776,104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2년 하반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임금 80,732원 × 월 가동일수 22일)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식 평가법에 의하여 왼쪽 귀 전농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 지속성 청각성 현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0.4%, 총 상실률 43.62% [= 30.4% + {(100 - 30.4%) × 19%} / 100]

2) 계산(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12. 2. 1.부터 2013. 7. 26.까지 : 2,400,000원 × 43.62% × 15.0310(= 50.2384 - 35.2074) = 15,735,653원

② 2015. 4. 27.부터 2033. 7. 26.까지 : 2,400,000원 × 43.62% × 125.9013(=

192.5630 - 66.6617) = 131,803,552원

③ 2033. 4. 27.부터 2053. 7. 26.까지 : 1,776,104원(80,732원 × 22일) × 43.62%
× 88.7352(= 281.2982 - 192.5630) = 68,746,404원

④ 합계 : 216,285,609원(= ① + ② + ③)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원고들은, 원고 A의 좌측 청력상실에 대하여 와우이식술이 필요하므로 인공와우기
계 값 20,000,000원 및 수술비 1,000,000원의 합계 21,000,000원을 향후 치료비로 구하
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2008. 11. 28.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청력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
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 2008. 12. 16. 서울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에도
청력호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술전 청력이
이미 전농인 경우는 수술적 치료 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점,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취지는 원고 A의 청력의 개선을 위해 와우 이식술을 시
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와
우 이식술을 시행했을 때 원고 A의 청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
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노동능력상실률은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하므로, 만약 원고 A가 와우 이식술로 인하여 청력이 개선된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범위는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므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액은 86,514,243원(= 216,285,609원 × 40/100)이다.

라. 손익상계

원고들이 N병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은 이 부분을 재산상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한 후 청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재산상 손해액은 앞서 인정한 86,514,243원에서 위 36,000,000원을 공제한 50,514,243원이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 A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한 위자료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1) 원고 A: 18,000,000원
- 2) 원고 B, C : 각 2,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68,514,243원(= 50,514,243원 + 18,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양희

 판사 조승우

 판사 신동웅